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34)

##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자 등과 조합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인도집행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폭력 행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